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는 산재보험 대상자에서 제외 안됨

서울고법 2000누6208

1. 판결요지

노조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와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처분경위

원고는 1984. 9. 25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함)에 입사한 이래 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및 1991. 8. 21부터 1996. 11. 4 까지 사이에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노조 업무에 전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5. 8월경 두 눈에 통증을 느끼고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좌안이 실명되고 우안의 시력마저 거의 잃게 되어 1995. 10. 30 인천 길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은 결과 시신경염

의 진단을 받았다는데 1996. 9. 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은 결과 그 원인이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임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는 1997. 6. 23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9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전임 근무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1) 원고의 노조업무 수행

(가) 원고는 1988. 6. 7부터 1989. 10. 1까지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차례 역임한 후 1991. 8. 21부터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맡아 단체협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승낙하에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였다.

(나) 당시 노동조합에는 전임자가 원고와 사무장 2인뿐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현장 순회,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라인토론회 조직 및 개최, 간부 교육 및 수련회 주관, 경조사 참석, 임금협상 초

안 마련 및 임금교섭 등의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비협조적(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2월 중순 또는 3월 중순경부터 약 3개월간 회사측과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여 그 협상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차를 극복하고 별다른 충돌없이 타결을 이끌어냈는데, 1995년의 경우에는 2. 7부터 노동조합측의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4. 19부터 교섭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① 5. 17, 18일 노동조합 쟁의행위 결의 및 발생신고 ② 5. 25 - 27일까지 원고 등 전임자 2인을 포함하여 7인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 ③ 5. 26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확정안 발표 ④ 5. 28 노동조합 파업돌입 ⑤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수습사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6. 3 원고 삭발 ⑥ 6. 5 교섭타결, 파업종료

(라) 그런데, 소외회사측이 1995. 6. 14 파업 불참자들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비상회의·라인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측에 거센 항의의 뜻을 전하여 결국 7. 4일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추가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

또는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외부 활동에 치중하거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바는 없었다

(2)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및 진행 경과

(가) 원고는 1995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된 후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 추가수당 지급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같은 해 8월경부터 두 눈에 통증과 시력감소가 발생한 이후 왼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되자 같은 해 10. 30부터 인천 길병원에서 시신경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처럼 왼쪽 눈의 시력을 전부 잃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1996년의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는 직접 교섭위원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를 거부하였던 관계로 수개월간 눈의 통증을 참아가며 교섭에 참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눈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 끝에 오른쪽 눈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자 1996. 9. 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시력장애의 증상 외에도 시신경염에 흔히 동반되는 안구통증, 시신경 위축, 율혈유두, 대광반사의 구심성 장애가 있고, 하지마비, 배뇨장애, 좌우측 상하지의 건반사 증가와 병적반사 출현 등 척수염의 증상까지 관찰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질병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하였다. 

(다음호에 계속)